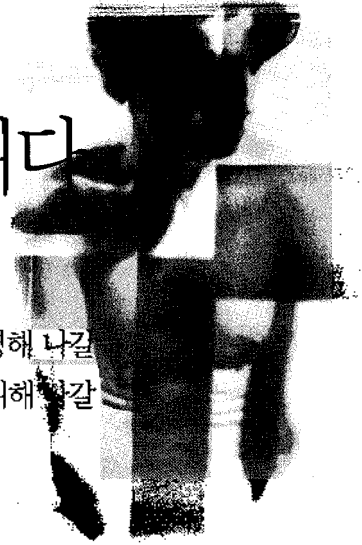


감염인의 성생활

# 감염은 성생활의 끝이 아니다

:: 이미영 본회 광주센터 간호사



에이즈에 감염되고 나면 감염인으로서 일상생활을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갈 것인가, 특히 본능으로서의 성적욕구의 문제, 성생활을 어떻게 영위해 나갈 것인가는 감염인의 삶에서 제기되는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에이즈가, 급속한 확산추세와 질병의 심각성으로 인해 전 인류의 문제로 떠오르면서 우선은 전파의 차단이 가장 큰 과제가 되었지만 그 외에도 경제, 인구,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인류에게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예방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감염되어 고통을 겪고 있는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나 복지에 대한 관심은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이즈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연령층에 파급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전파경로가 성관계를 통한 것으로 감염인의 주 연령층도 역시 성적으로 가장 왕성한 20-40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창 삶을 계획하고 누려야 할 시기에 죽음의 문제를 만나고,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넘어선다고 해도 감염인으로서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갈 것인가, 특히 본능으로서의 성적욕구의 문제, 성생활을 어떻게 영위해 나갈 것인가는 감염인의 삶 전반을 통해 제기되는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콘돔은 성관계에서 필수

대부분의 감염인들이 감염진단을 받고 나면 초기에는 섹스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전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심

리적으로 위축되면서 성적 활동이 중단되거나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감염인의 약 20%는 성생활을 완전히 중단하였고 콘돔을 사용하는 안전한 성으로 전환한 경우가 65%, 다소 위험한 성관계를 지속한 경우는 15%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절제생활을 지속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이유는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감염인 대부분은 성적으로 왕성한 젊은 층(20-40대)이 대부분이고 또한 과거에 비해 항바이러스제의 발달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훨씬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감염이 되었다고 성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다. 감염은 성생활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많은 감염인들이 감염 이후에도 성생활을 지속하면서 만족감을 누리고 있다. 감염 이후에도 성은 계속될 수 있으며 다만 변화가 필요할 뿐이다. 성생활은 지속하되 안전한 성행위를 함으로써 전파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이영숙, 2003)

감염인의 성생활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을 꼽는다면 첫째는 성 상대자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는가? 이고, 둘째는 본인의 건강에 위해가 없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런 면에서 감염인의 성생활은 비감염인의 그것보다 계획적이고 준비된 것이어야 한다. 상대에게의 전파문제도 그렇거니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콘돔은 늘 소지하고 다니고 콘돔없는 성관계는 피한다.

one night stand와 같은 잘 모르는 사람과의 성관계, 불특정 다수와의 성관계는 피하는 것이 좋는데 이는 특히 감염인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다. 에이즈를 제외한 기타의 성병들은 콘돔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100% 예방이 불가능하여 감염인에게 매독, 임질 등의 질환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숲을 마신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고 콘돔 사용시의 실패율도 높아지므로 충동적인 성관계는 가능하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감염인이 감염사실을 알고도 성생활을 수락할 성 상대자가 있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다. 따라서 성적욕구가 상승하고 해소가 어려울 경우 자위행위를 통하여 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것은 도움이 되며,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이나 명상요법 등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 체내의 에너지 수준을 낮추어 주는 것이 권장된다.

**감염인간 성관계시 재감염에 유의해야**

감염인 간의 성관계에 있어서도 콘돔의 사용은 필수이다. 흔히 감염인 간의 성관계는 전파에 대한 우려가 없으므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감염인 간의 성관계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성관계를 통한 기회감염 및 바이러스의 재감염이다. 에이즈 바이러스는 타입과 아종, 변종이 다양하여 서로 다른 바이러스를 가진 감염인이 무방비 상태로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 이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성 상대자가 보유한 바이러스에 재감염되고, 또 상대가 내성을 획득한 바이러스를 보유한 경우도 건강상의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 만약 감염 초기에 항바이러스제 복용으로 건강을 잘 유지하던 감염인이 내성을 가진 바이러스를 보유한 감염인과 콘돔없는 성관계로 재감염된다면 그는 하루아침에 내성을 가진 감염인과 같은 상태로 떨어지게 된다. 이는 감염인의 건강과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감염인의 성생활에 있어서의 본인의 의무와 아울러 이를 어길 시의 벌칙까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 감염자는 다음 각호의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동맥경이 정하는 감염의 예방조치없이 행하는 성행위
  2.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행위
- 제25조(병력) 다음 각호의 3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자

에이즈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개선되고 콘돔을 사용한 성관계의 안전성에 대한 확신이 일반 대중에게 도달되기 전까지는 감염인이 성상대자에게 감염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성관계를 갖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예방조치없이 비감염인과 성관계를 하였을 경우 상대의 감염여부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겠다고 규정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감염인의 인권에 분계가 제기될만한 법적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상대에게 감염사실을 알리지 않았을지라도 예방조치 즉 콘돔을 사용한 성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성생활을 지속하는 감염인들이 좌절감 덜 느껴**

굳이 깊은 의미까지를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성은 본능이며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다. 어떤 이유로든 자신의 결정을 제외하고는 타인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성관계는 단순히 쾌락의 추구나 성적욕구의 해소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랑이 전제된 성관계는 두 사람의 사랑의 결속이며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성생활을 지속하는 감염인들은 우울증과 좌절감을 덜 느끼고 있으며 사랑받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어 오히려 의도적 전파행위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복수심과 같은 반감이 적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 심리는 삶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어 건강상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이영숙, 2003) 이제 여더 곳에서 감염인의 인권에 대한 소리가 높아가고 인류는 에이즈와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알고 있다. 에이즈가 더 이상의 확산을 멈추고 기본권으로서 감염인의 성적인 권리가 옹호되고 이로 인하여 감염인들이 보다 질적인 삶을 누릴 수 있으면 감염인과 비감염인을 불문하고 우리 모두의 건전하고 안전한 성습관과 성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절실하다.